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94
----------	-------

발의연월일 : 2025. 7. 15.

발 의 자 : 김현정 · 이소영 · 박지원
장종태 · 김상욱 · 허성무
조계원 · 안도걸 · 민병덕
이정문 · 이수진 · 김 윤
박해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상법에서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와 관련하여 소각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원에게

대한 보상 등 그 계속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1조의4 및 제341조의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의4 및 제34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① 회사가 제341조 또는 제341조의2

에 따라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하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4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로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의무이행 또는 임직원에게 대한 보
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
회의 결의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기의 주식을 계속 보
유하고 목적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의 내용에 보유의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을 포함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자기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 보유의 목
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고 그 보유의 목적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
시 제34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자기의 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1조의5(자기주식에 관한 공시) ①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기 주식의 수, 취득 일자, 취득 목적 및 처분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소각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회사의 자기의 주식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341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41조의4제1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계속 보유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여야 하고, 공시에 관한 기한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u> <u>① 회사가 제341조 또는 제341</u> <u>조의2에 따라 자기의 주식을 취</u> <u>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u> <u>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기간 내에 제343조에 따라</u> <u>이사회 결의로 소각하여야 한</u> <u>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상</u> <u>의 의무이행 또는 임직원에게 대</u> <u>한 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u> <u>회사는 이사의 결의로 제1항</u> <u>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기</u> <u>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목적</u> <u>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u> <u>우 결의의 내용에 보유의 목적</u> <u>과 기간, 처분 계획을 포함하여</u> <u>결의하여야 한다.</u> <u>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자기의</u> <u>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 보유의</u> <u>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u> <u>여야 하고 그 보유의 목적이 더</u>

<신 설>

이상 인정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제34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자기의 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1조의5(자기주식에 관한 공시)

①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기 주식의 수, 취득 일자, 취득 목적 및 처분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소각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